

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

‘신규고용촉진장려금’이 ‘고용촉진지원금’으로 개편, 지원금액도 약 20% 인상돼 연간 최대 860만원(기존 720만원)으로 상향조정됐다.

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’ 고시를 제정,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[편집자 주]

고용촉진지원금 주요 내용

- 현행 ‘신규고용촉진장려금’이 올해부터 ‘고용촉진지원금’ 제도로 전면 개편됨
-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금액을 약 20% 올려 최대 연 860만원(기존 720만원) 지원
-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
-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,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 지원(고용유지기간이 늘어나면 지원금도 높아짐)
- ‘고용촉진지원금’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
-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함

고용촉진지원금이란?

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·여성가장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(중증장애인·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860만원)을 지원한다.